

이천시 시장 참 공약 실천관리 규정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2009· 4· 23 훈령 제192호
일부개정 2019· 1· 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지정,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이행평가 등 공약사항의 실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9· 1· 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세부 공약사업별로 담당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필요시 관련부서 지정) 〈개정 2019· 1· 1〉

③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주관부서에서는 이천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여 추진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②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약 취지와 적합성을 검토하며, 사업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2.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
3. 기존 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4.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강구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은 관계부서와의 사전 협의
6.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시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세부 실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부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1>

제4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항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검토·분석하고 부진사항이나 문제사항 등은 자체 점검·조사로 시정하여야 하며, 추진상황과 추진실적 및 심사평가 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매 분기별로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 추진 상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추진 상황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

제6조(공약전산시스템 등록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의 시행계획과 추진 사항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시스템(연동기능/공약사항)에 수시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등록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제7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

② 평가단은 50인 이하로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일반행정, 복지, 교통, 환경, 문화관광, 지역개발, 교육, 농축산, 지역경제)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제8조(임기) ①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장 및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9조(평가) ①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진단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독려하며, 이행 가능한 부분은 보다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과 지원을 한다.

제10조(평가 결과의 공개) 평가단에서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 결과는 평가 후 1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한 매니페스토 운동(참 공약 실천하기)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이천시 시장 참 공약 실천관리 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내지 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

공약사항 관리카드

사업명								
주관부서		추진담당		협조부서				
사업기간		총사업비						
법규제개정 필요성 (조례규칙포함)		사전절차이행						
추진실태	완료	추진중				시기 미도래	미착수	비고
		정상	이행	부진	보류			
개요 ○ 위치 : ○ 사업량 : ○ 내용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계	투자계획						00년 이후
		기투자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당해연도 사업비 및 집행현황								
세부사업명 \ 사업비	총사업비	00년 사업비						
		예산액				지출액		
		계	당초	증감	증감사유	집행	진도	
계								

추진현황

추진실적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 '00. 0. 00 :

향후 추진계획

- '00. 0. 00 :
- '00. 0. 00 :

추진중 변경사항

-
-

문제점 및 대책

-
-

[별지 제3호서식]

(미기재)	사업명
부서명	

사업개요

○

-

※ 사업개요 간략하게 작성

추진 경과 및 실적

○

-

※ 추진경과 및 실적 간략하게 작성

추진계획

○

-

※ 추진계획은 완료시점까지 자세하게 작성

-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중점 사항임

문제점 및 대책

○

-